❄❄❄❄❄❄❄❄❄❄❄❄ 공지사항 ❄❄❄❄❄❄❄❄❄❄❄❄

공산품안전검사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안내

공업진흥청 고시 제1994-555호

품질경영촉진법 제19조에 의한 공산품안전검사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고시한다.

1994년 7월 14일
공업진흥청장

공산품 안전 검사에 관한 일반기준은 별지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품질경영촉진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상품별 안전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의 공통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의 서식) 검사기준의 서식은 KSA0001(규격서의 서식)을 따른다.

제3조(검사기준의 구성) 검사기준의 구성은 다음에 따른다.

1. 검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본체와 해설을 명시한다.
2. 검사기준에 부속서가 있는 경우에 "부속서"라 명시하여 본체 바로 뒤에 넣는다.
3. 검사기준에는 검사기준의 제·개정된 경과 등 검사기준의 이용자가 검사기준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설서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의 심의 경과
(2) 심의중 특히 문제된 사항
(3) 적용범위, 제품의 용도, 사용조건, 사용방법 설명
(4) 규정항목 설정 이유 및 내용 설명
(5) 품질수준, 종류, 등급 등의 근거
(6) 대응하는 국내 및 국제규격이 있는 경우 해당검사기준과 대응하는 국내·국제규격과의 항목, 내용, 수준의 일치성여부 설명
(7) 개정된 부분과 내용
(8) 현안사항(장래의 방침 포함)
(9) 실험데이터가 있을시 실험데이터

4. 검사기준에 필요하다면 참고·해설을 넣는다.

제5조(용어의 뜻)

검사기준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의 명칭 : 개개의 기준에 붙이는 제목
(2) 본체 : 기준 구성상의 주체가 되는 부분
(3) 부속서 : 내용으로서는 규격의 주체가 되는 내용이지만, 기준의 구성상 추려서 본체에 준하여 정리한 것
(4) 참고 : 본체 및 부속서의 규정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충하는 것 본문중에 기재하는 것과 특별히 빼내서 정리하는 것이 있다. 다만, 어느 것이나 검사기준의 일부는 아니다.
(5) 해설 : 본체 및 부속서에 규정한 내용, 참고로 기재한 내용과 이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
다만, 검사기준의 일부는 아니다.
(6) 항목 : 본체 및 부속서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 개개의 독립된 규정으로서 문장·그림·표·식 등으로 조립되고 각각 하나의 정리된 요구사항 등을 표시하는 것
(7) 본문 : 항목 구성부분의 주체가 되는 문장
(8) 비고 : 본문·그림·표 등에 직접 기재

❋❋❋❋❋❋❋❋❋❋❋❋❋ 공지사항 ❋❋❋❋❋❋❋❋❋❋❋❋❋

하면 복잡해지는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

(9) 주 : 본문 · 비고 · 그림 · 표 등의 일부 사항에 주기 부호를 붙여 빼내서 별도로 기재하는 것

(10) 보기 : 본문 · 비고 · 주 · 그림 · 표 등에 표시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11) 관련규격 : 어떤 기준이 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한국공업 규격 혹은 국제규격 또는 그들에 준한 규범문서. 대응 국제규격(ISO, IEC 등)도 포함한다.

제6조(검사기준에 사용하는 측정단위) 검사기준에 사용하는 모든 측정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기준에 포함되는 내용) 검사기준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검사기준의 표현형식은 KS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따른다.

1. 적용범위
2. 용어의 뜻
3. 종류, 등급, 호칭
4. 품질
   - 4. 1 겉모양
   - 4. 2 형상, 치수
   - 4. 3 재료
   - 4. 4 구조, 성능
   - 4. 5 이화학성질
5. 시험방법
6. 검사방법
   - 6. 1 검사로트의 구성
   - 6. 2 시료채취방법
   - 6. 3 검사항목별 검사방식, 검사조건
   - 6. 4 검사로트의 판정기준
7. 포장 및 표시방법
8. 해설서

제8조(제도통칙) 검사기준에 적용되는 공통 또는 기본적 제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KSA 0005(제도통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험장소의 표준상태) 시험을 실시하는 장소의 온도, 습도 및 기압의 표준상태에 대하여는 각 상품별 검사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KSA 0006(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치의 맺음법) 측정치 또는 시험성적의 수치맺음법에 대하여는 각 상품별 검사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KS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타규격의 인용) 검사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공업규격 등 적용규격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준의 개정 등 별도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고시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정된 규격 등을 적용한다.

제12조(표시사항에 대한 판정) ① 검사기관의 장은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 상품별 검사 기준에서 정한 품질표시가 미비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보완시킨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검사에 있어서 제품의 품질 또는 소비자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 처리한다.

제13조(파괴검사생략) 사전검사 대상상품으로서 샘플링검사에 의하여 합격판정을 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신청수량이 소량일 경우에 한하여 상품별 검사기준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특례) ① 검사기관의 장은 각 상품별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규개발상품이나 신청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규격제품에 대

❄❄❄❄❄❄❄❄❄❄❄❄❄ 공지사항 ❄❄❄❄❄❄❄❄❄❄❄❄❄

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개발 상품중 특수 목적의 상품으로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③ 이 기준 및 각 상품별 검사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즉시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종전의 품질검사기준은 개개 검사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업진흥청 고시 제1994-554호

안전검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내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안전검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

1994년 7월 14일
공업진흥청장

안전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품질경영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상품(이하 "검사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품 사전검사"란 국내 제조업자가 안전검사 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에 대해 출고전에 받는 안전검사를 말한다.
2. "시료검사"란 사전검사 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중에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수입후의 불합격에 따른 수입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제품 수입전에 소정의 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 안전검사를 말한다.
3. "확인검사"란 사전검사 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중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제품의 국내 출고전 및 세관 통관전에 시료검사시의 상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안전검사를 말한다.
   관세법 제122조에 의거 매각된 검사상품의 경우는 동법 제4조에 의한 안전검사를 말한다.

제3조(비검사상품 확인) ①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안전검사 신청의무자로부터 검사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신청이 있을시는 당해물품에 대해 검사상품 또는 비검사상품임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비검사 상품 확인 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당해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신청 의무자)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료검사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

❄❄❄❄❄❄❄❄❄❄❄❄❄❄ 공지사항 ❄❄❄❄❄❄❄❄❄❄❄❄❄❄

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품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 허가를 받은자로서 검사상품을 수입한자 (수입면장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실수요자도 포함)
2. 관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매각된 검사상품에 대해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자
3. 검사상품의 국내 제조업자(가공업자를 포함한다)

제5조(시료수입) ① 검사상품의 시료검사용 시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료확인 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료검사에 사용하는 시료수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 안전검사기준의 검사방법중 겉모양, 형식이외의 검사항목에 대해 규정된 시료의 크기(n)으로서 안전검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기재하여 정한 수로 하고 이때의 시료의 크기는 검사기준에 규정한 검사항목의 시험횟수를 말하여 그 크기는 최소 3이상 최대 5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예정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많을 경우는 수입예정량의 초과분에 대한 시료수를 확인검사시의 시료수에 추가하여 검사한다.

제6조(시료검사신청서 등) ① 사전검사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시료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때에는 수입면장(또는 수입반출증명서) 또는 공매낙찰증명 사본과 안전검사기관의 장이 사후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립,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직, 인원, 체제 및 방법과 절차 등 판매후 대소비자 봉사 계획을 명시한 사후봉사계획서(이하 "사후봉사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사후봉사계획을 확인하고 공업진흥청장이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료검사를 실시하여 시료전량이 합격한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료검사 합격증을 발급한다.

③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품 사전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안전검사기관의 장이 사후 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후봉사계획서를 갖추어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별지 13호 서식에 의한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봉사계획서 확인) ①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제출된 사후봉사계획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사착수전(수입품의 경우는 시료검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서류 확인 또는 안전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결과 사후봉사계획서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후봉사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내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시료검사 합격증 확인) ① 수입 승인기관의 장은 사전검사품목에 대하여 수입 승인할 때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자료확인 신청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검사 합격결과 통지서 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사 동일 규격 상품 수입예정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은 원본에 의하고 확인 후는 원본을 수입 승인기관 보관용 수입승인서와 함께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검사) ① 검사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확인검사 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의 시료를 세관보세창고에서 검사기준에 규정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4호서식에 의한 확인검사결과 통지서를 수입허가(승인)서 사본과 함께 세관에 제출한후 통관하여야 하고 통관후 별도 장소에서 검사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합격증표 부착을 완료한후 그 결과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후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합격표시의 별도표시 방법을 승인받아 표시를 할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통관시 사전검사상품에 대하여는 안전검사기관의 장이 발행한 확인검사 합격결과 통지서 사본을 확인한후 통관하여야 한다.

⑤ 관세법 제122조에 의하여 매각된 검사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매수인은 10일이내에 공매낙찰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확인검사 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 표시의 별도 표시방법) ① 안전검사의 장은 검사상품이 수량이 많아 개개 상품마다 합격증지 부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합격표시를 자체적으로 인쇄 부착토록 할 수가 있다.

②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인쇄부착이 필요할 때는 제9조에 의한 시료검사 합격통지서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별지 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부착되는 상품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매 검사신청 로트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합격표시 인쇄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매분기 종료10일전에 합격증지 자체 인쇄 승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사)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재검사 신청서에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안전검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① 제7조에 의한 시료검사의 경우에는 안전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의한 확인검사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가격(CIF)에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율을 통한 수수료를 안전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조(시료검사의 면제 및 생략)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수입시 시료검사에 합격한 시료와 동일한 규격의 상품을 재수입하는 때에는 시료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시료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료검사 동일규격 상품 수입예정 신고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검사를 실시한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사 동일 규격상품 수입예정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료검사 동일 규격상품수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한다.

❄❄❄❄❄❄❄❄❄❄❄❄❄ 공지사항 ❄❄❄❄❄❄❄❄❄❄❄❄❄

③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이 확인된 상품에 대하여는 시료검사와 확인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안전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생략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하여 미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승인 등에 관한 운영 요강 안내

공업진흥청 고시 제1994-556호
제정 1994년 7월 14일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품질경영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 등에 관한 승인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요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전문기관"이란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중 사전검사 상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사업, 안전전문기관이 검정한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보전사업, 기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업진흥청장의 검정사업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정"이란 안전전문기관에서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검정대상공산품을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검정기준에 의거 안전전문기관의 소속 검정원이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로트의 합·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검정업무규정"이란 안전전문기관이 검정대상 공산품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합·부표시 등을 기재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검정대상공산품"이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중 사전검사 상품을 제외한 공산품으로서 인체 및 환경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검정업무 세부규정) ①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 세부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대사공산품명
2. 적용범위
3. 검정업무규정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
4. 검정기준
   가. 검정항목
      (1) 겉모양
      (2) 형상, 치수
      (3) 치수
      (4) 재료
      (5) 구조, 성능
      (6) 이화학적 성질
   나. 시험방법
   다. 검정방법
      ○ 로트의 구성방법
      ○ 시료채취 방법
      ○ 검정항목별 검사방식 및 검사조건
      ○ 검정대상로트의 합·부판정 기준
      ○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라. 표시
5. 부속서류

(1) 검정항목의 설정이유 및 내용설명
(2) 품질, 종류, 등급의 수준설정 근거
(3) 검정대상공산품의 검정기준과 대응하는

❄❄❄❄❄❄❄❄❄❄❄❄ 공지사항 ❄❄❄❄❄❄❄❄❄❄❄❄

국내 및 국제규격의 검정항목, 내용, 수준의 일치성 여부 설명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와 검정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 승인신청) ① 검정사업을 승인받고자 하는 안전전문기관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사업승인신청서 및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 규정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승인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현지확인) 공업진흥청장은 검정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시에는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정내용 표시방법)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검정 합격표시의 검정필증을 붙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공업진흥청장은 안전전문기관에 대하여 검정사업 승인기준 및 검정업무규정과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실적제출) 이 규정에 의하여 안전전문기관 검정사업을 승인받은 자는 매년 1월말, 7월말까지 검정사업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검정사업의 승인 취소 등) ①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전문기관에 대한 검정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전문기관이 검정사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검정업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2. 규칙 제 조에 의한 검정사업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업무 승인을 받은 경우

②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전문기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41조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0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운영현황 확인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검정사업에 있어서 규칙 제 조 제 항의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수수료) 안전전문기관은 검정을 실시하는 상품별로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가격(CIF)의 1%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검정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94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안내

1. 목적
   - 전 국민의 발명사상 앙양
   - 발명인의 사기진작 및 발명풍토 조성
   - 최신 기술정보의 상호교류와 기술개발 촉진
2. 전시기간 및 장소
   - 전시기간 : 1994. 11. 3(목)~11. 9(수) (7일간)
   - 전시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

❄❄❄❄❄❄❄❄❄❄❄❄ 공지사항 ❄❄❄❄❄❄❄❄❄❄❄❄

제4전시실

3. 시행기관
   —주최 : 특허청
   —주관 : 한국발명특허협회
   —후원 : 상공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변리사회
4. 출품물 분야
   —일반전시 : 기계(금속포함), 전기(전자포함), 섬유, 화학, 농수산, 정보통신, 토건 등 7개 분야
   —특별전시 : 국고지원 시작품, 국제발명품전시회 수상품, 특허기술상 수상품
   —기획전시 : 우리의 전통 발명 및 과학문화재
5. 출품대상
   —개인 또는 기업체(대기업 포함)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된 발명, 고안품
   —국고 보조지원 시작품(미전시된 '93년 지원건, '94년 지원건), 국제발명품전시회 수상품 및 특허기술상 수상품(미전시된 '93년 수상품, '94 수상품)
6. 출품규격 : 가로 150cm, 세로 100cm, 높이 150cm, 무게 70kg 이내의 것(단, 특수규격은 본회와 사전협의 바람)
7. 시상
   —시상계획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WIPO 상 1, 대기업우수발명상 3, 중소기업우수 발명상 5, 금상 7, 은상 7, 동상 7, 장려상 32 등 총 64점
   —시상대상 선정기준
   • 기술성과 기업성이 우수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발명품 및 고안품
   • 1기업 또는 1개인이 출품한 수개의 발명품중 2개 이상이 고득점 할 경우 1개의 발명품(고안품)만 시상대상으로 선정함.
   • 수상자는 등록권자로 함.
   • 특별전시품(국고보조지원 시작품, 특허기술상 수상품, 국제발명품전시회 수상품)은 시상대상에서 제외함.
8. 전시회의 특징
   —우수발명(고안)품을 비교 관찰할 수 있음.
   —발명(고안)품의 기술성을 체득할 수 있음.
   —발명(고안)품의 양도·양수 및 알선이 가능함.
   —발명(고안)의 지도 상담을 통하여 발명지식을 높일 수 있음.
9. 특전
   —발명장려관 무료전시, 국제발명품전시회에 출품추천 및 지원
   —수상발명품은 발명특허지, 변리사회지 등에 홍보
   —수상자는 발명의날에 발명유공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10. 출품신청
   —전시비용 : 무료
   —접수기간 : 1994. 8. 1(월)~8. 31(수)
   —접수처 : (135-7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한국종합전시장 별관 2층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지원부
   —신청방법 : 소정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신청(당일소인 유효)
   —문의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발명지원부
   【TEL : (02) 551-5571~2】
   한국발명특허협회 부산지회
   【TEL : (051) 623-4466, 4476】
   한국발명특허협회 광주지회
   【TEL : (062) 372-0693, 370-4979】

대일기술이전 알선창구의 활용안내

우리나라는 대일교역에 있어 '65년 국교정상화 이래 매년 만성적인 무역불균형 현상을

❄❄❄❄❄❄❄❄❄❄❄❄ 공지사항 ❄❄❄❄❄❄❄❄❄❄❄❄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일무역불균형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인을 개선,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고도화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술력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이며, 특히 한일산업기술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관련 동협회에서는 제15회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합의에 따라 1983년 이래 "대일기술이전알선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오던 중 '85년 12월 양국정부간에 개최된 제18차 한일무역회담에서 대일기술이전 알선창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충분한 교섭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본회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일경제협회 조사부 TEL : (02)551-1541/6, FAX : (02) 551-1540

'94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지원 및 확인요령 공고 안내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83호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애로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7월
상공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 임금체불 및 부도 우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지원

2. 지원대상업체 유형

○유형A : 자체 분규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유형B : 특별한 자체 귀책사유 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3. 지원절차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별표)의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노사분규 피해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류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 1부(별지 각호서식 생략)

나. 거래기업 또는 자기기업의 노사분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확인 및 확인서 교부

확인기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확인여부를 결정하되 제2항의 지원대상업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업체에 확인서 1부를 교부한다.

가. 당해기업 또는 거래기업의 노사분규 사실여부 및 분규상황

나. 중소기업인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6. 확인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경우 확인기관으로 부터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보고

확인기관은 확인결과 및 수혜사항을 결과보

❄❄❄❄❄❄❄❄❄❄❄❄❄❄ 공지사항 ❄❄❄❄❄❄❄❄❄❄❄❄❄❄

고서(별지 제3호 서식 생략)에 작성하여 12. 31까지 상공자원부(산업진흥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기타

확인기관은 전 각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상공부 공고 제93-50호는 폐지한다.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확인기관

확인기관명	확인대상업체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방상공회의소	○ 상공자원부 소관 전제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 상공자원부 직할공단 및 마산, 이리 수출자유지역관리소	○ 공단(수출자유지역포함)내 입주기업
○ 한국철강협회	○ 철강, 비철금속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 요업, 석유 및 정밀화학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기계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전기(전선, 전지포함)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섬유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자동 관련기업(타업종수급기업체 포함)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 전자관련기업(타업종수급기업체 포함)
○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 조선관련기업(타업종수급기업체 포함)
○ 한국백화점협회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규모 소매점

'94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안내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종류	대상
수출의 탑	○ 백만불대 탑(2종) -1, 5백만불 탑	○ 중소기업
	○ 천만불대 탑(2종) -1, 5천만불 탑	○ 중소기업 및 대기업
	○ 억불대 탑(5종) -1,5,10,50,100억불 탑	○ 중소기업 및 대기업
포 상	○훈·포장 -산업훈장(5등급) -산업포장 ○표 창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상공자원부장관 표창 - 한국무역협회회장 표창	○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일반수출업체 -자기상표수출업체 -우수품질제품수출업체 -소액수출업체 -일본시장개척유공업체 ○ 기타유공자 -해외교포무역인 -무역대리업자 -무역지원 유공자

2.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

○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백만불대 탑(1, 5), 천만불대 탑(1, 5), 억불대탑(1, 5, 10, 50, 100) 단위의 실적을 기록한 업체중 당해년도중 수출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업체.

○ 다만, 백만불대(1, 5) 수출의 탑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한 함.

나. 정부포상의 대상

(1) 수출업체 대표자

○ 일반수출업체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불(중소업체는 100만불) 이상이고 당해년도 수출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평균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업체.

○자기상표수출자(2인이내)

-자기상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해외에서

의 인지도가 높고 수출증대에 기여한 업체로서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이 추천한 업체.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인 수출업체에 한함.

○ 우수품질제품 수출업체(각 1인)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수출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한 업체로서 관련 수출조합(협회)의 장이 추천한 자.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 수출업체에 한함.

○ 소액수출업체(3인이내)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소액수출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한 업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한 자.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 수출업체에 한함.

○ 일본시장 개척 유공업체(1인)

—일본 현지 진출업체(현지법인, 지사)중 대일수출증가율이 현저한 업체로서 주일 한국대사가 추천한 자.

(2) 수출업체 종업원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업체장이 추천한 자.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3) 기타 유공자

○ 해외교포무역인(4인 이내)

—한국상품 수출에 기여한 해외교포무역인으로서 외무부장관이 추천한 자.

○ 을류무역대리업자(1인)

—수출알선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업체로서 한국수출구매업협회장이 추천한 자.

○ 갑류무역대리업자(1인이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저가조달에 기여한 업체로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추천한 자.

○ 무역지원 유공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단체, 외국환은행, 무역 및 통상관련 기관 등 무역지원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정부포상의 제외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무관련 규칙·규약에 의하여 적색거래처로 구분 조치된 업체(자)

○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및 임원(공장장 및 현장소장 포함)

—'92~'93년간 산업재해율이 계속해서 동종업종의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및 임원은 포상에서 제외.

• 다만, 최근 1년간 재해율을 30%이상 감소시켜 산업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포상신청이 가능.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 및 그임원은 포상제외.

—다만, 첨단기술의 개발 등 뚜렷한 공적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포상신청이 가능.

○ 5년이내에 정부포상을 받은 자 및 상훈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

가. 수출실적은 다음 구분에 의거 산정함.

○ 당해년도 : '93. 7. 1~'94. 6. 30

○ 전년도 : '92. 7. 1~'93. 6. 30

나.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8절(수출·수입실적)의 규정에 의하고,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4조 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5—1—1조에 의거 외화 획득으

❄❄❄❄❄❄❄❄❄❄❄❄ 공지사항 ❄❄❄❄❄❄❄❄❄❄❄❄

로 인정받는 경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

○ 수출의 탑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인 경우 실적계상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하고 수탁가공 수출은 외화가득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다. 수출실적의 확인

○ 직수출(통관절차 거친 분)은 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 기타 수출의 경우에는 주거래 외국환 은행장이 확인한 금액에 한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 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5—1—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

4. 포상신청 및 추진절차

가. 신청서 배부 : '94. 8. 1(월)~8. 16(화)

나. 신청 및 추천기간 : '94. 8. 8(월)~8. 24(수)

다.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업부(551—5333/6) 및 국내 각 지부

라. 제출서류

(1)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수출의 탑 또는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을 신청하거나 소속 종업원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부문유공자 포상신청서 2통(별지 제1호 서식 생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1) 공적조서 각 5통(별지 제2호 서식)
2) 로칼 등 기타 실적증명서 1통(별지 제3호 서식 생략)
3) 중소업체의 경우는 주거래 외국환 은행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1통(별지 제4호 서식 생략)
4) 이력서 2통(별지 제5호 서식 생략)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6)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확인서(세무서 확인)
7) 종합무역상사는 중소기업 수출대행실적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

(2) 포상대상자 추천기관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추천순위를 명기한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통에,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각 5통과 이력서(별지 제5호 서식 생략) 각 2통,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5.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업무과
(Tel : 551-5333)

용어해설 ①

Window RAM

윈도우 램이란 화상 처리에 주로 사용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과 멀티 미디어 등의 윈도우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로써 삼성전자가 축적된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윈도우 램이라는 새로운 사양을 세계시장에 제안, 최초로 개발한 그래픽 전용 반도체이다.

그동안 화상 처리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던 비디오램(VRAM) 보다 처리속도가 3배정도 빠르고 칩 사이즈가 1/8로 작아 고집적 소형화 되어가는 셋트에 적합하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시장에 경쟁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이다.